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다936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B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8나7184 판결
판 결 선 고 2020. 5.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 제424조]. 따라서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채권 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없어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면 계속 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고,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어 파산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한 후 청구취지 등을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4조, 제462조). 이처럼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당연히 수계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채권자의 채권신고와 그에 대한 채권조사의 결과에 따라 처리되므로, 당사자는 파산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87587 판결 참조).

한편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소송수계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어서,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위 대법원 2017다28758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2017. 12. 12. 피고를 상대로 2016. 11. 경 지급한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 사건은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2018. 10. 15.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후 피고는 원심 계속 중이던 2019. 7. 25. 인천지방법원 2018하단409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원심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9. 11. 12. 변론을 종결하고

2020. 2. 4.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소송수계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어서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	-----	-----

	대법관	김재형
--	-----	-----

	대법관	이동원
--	-----	-----

주 심	대법관	노태악
-----	-----	-----